

폐식도외과 우수해외 논문상 수상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일반흉부수술우수 학술지 논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상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명칭)

본 상의 명칭은 '폐식도외과 우수해외 논문상' 이라고 칭한다.

제 3 조 (상의 성격)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해 전년도 국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우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해 수상한다.

제 4 조 (수상 인원)

매년 1명을 수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수상자 자격 및 조건

제 5 조 (수상자 자격)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수상 자격을 제한한다.
2. 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저자가 10년 내에 수상한 경우에는 책임저자가 수상한다. (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모두 10년내 중복 수상한 경우에는 차점 논문을 수상 논문으로 한다.)

제 6 조 (수상 대상 선정)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원 중 전년도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일반흉부수술 분야 우수 학술지 발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흉부외과가 개설된 병원의 과장이 추천한 회원으로 한다. 우수 학술지 심사 평가는 SCI(E) 등재 논문이면서 제1저자이고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이어야 한다. (일반흉부수술 우수 학술지 논문)

제 3 장 수상자 선정

제 7 조 (심사 위원회 구성)

1. 이차에 걸쳐 심사한다. 일차 심사위원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하고 이차 심사위원회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 상임이사들로 구성한다.
2. 일차 심사위원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이 그리고 이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장이 각각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3. 심사위원이 수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는 심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수상자 결정)

1.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소정의 심사 규정에 의해 심사하여 결정한다.
2. 논문의 제1저자가 수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저자가 10년 내에 수상한 경우에는 책임저자가 수상한다. (제1저자와 책임저자가 모두 10년내 중복 수상한 경우에는 차점 논문을 수상 논문으로 한다)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상의 수여

제 9 조 (상금 및 상의 수여)

1. 상패 및 상금은 연구기금 500만원 X 2명을 수여한다.
2. 상패 및 상금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이 수여한다.

제 10 조 (시상일 및 장소)

상의 시상은 매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 11 조 (기금관리)

1. 기금관리는 재무이사가 담당하고 상임이사회에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2. 기금관리의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부 칙

- 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에 따르거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 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나)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술위원회의 결의나 일반 관행에 따른다.

